

여행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

임 춘 심 /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교육부장

여행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형태의 소비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. 여행사에서 일어날 소비자 피해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.

① 여행취소

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
○ 당일 여행인 경우

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
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○ 숙박여행인 경우

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
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

○ 당일 여행인 경우

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전액 환급
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% 배상
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% 배상

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% 배상

○ 숙박여행인 경우

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전액 환급

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% 배상
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% 배상

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% 배상

② 계약조건의 위반

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
○ 당일 여행인 경우

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

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한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○ 숙박여행인 경우

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

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
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
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
③ 그 외

○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위약금 배상

○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,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○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,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○ 여행중 위탁수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,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○ 여행사의 고의 ·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,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(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·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)

가격이 싼 여행상품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. 여행경비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행에 관람 일정, 숙박 호텔 등을 미리 확인하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.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항상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전 시장조사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.

올바른 선택과 판단이 똑똑한 소비자를 만듭니다. 

▶문의전화 : 720-9898, 720-0328